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3. 31.(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 제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3월 24일에 있었던 제1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17-06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6일 위원회에 보고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9월 24일 위원회에 보고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 요금내역, 일부해지, 약정기간 등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 동등결합판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상품 간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 조문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단서 조문의 행위유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등결합판매’ 조문과 관련하여 위탁판매 개념을 명확화하고 중복된 요건 규정을 정리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

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곧바로 시행하되, 다만 청구서상 요금할인 세부내역 등을 구분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 개발 및 적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부터 SKT와 CJ헬로비전 건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서 미래부와 TTF도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수렴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셨네요.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난번 확인했던 것들은 최소화하고 확정되면 곧 일부는 빼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 약정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결합상품 이용자들의 해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위약금도 있지만 상품별 약정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일부 악성 이용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선택을 쉽게 하도록, 즉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약정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앞으로는 2년이면 2년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현재 이용자들은 약정기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결합상품의 기존 가입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부분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도개선 당시 기존에 결합상품을 가입한 가입자 중에는 가입 약정기간이 그때그때 달라 최대 6년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마련한 미래부의 신규약관은 신규가입자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존 가입자, 현재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가입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계약기간이 일단 도래하는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곧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번째,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케이블TV사업자들의 경우 동등할인을 계속 주장했었던 것이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동등할인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상품 구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정리된 것이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로 어느 정도 타협안이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보면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비비용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4월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에 대해 논란이 없는 기준 설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통신은 원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원가 개념을 지금까지 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상품의 원가 산정 이런 시도....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마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회계분리에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심사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여기는 소요비용 그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에 '(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원가 개념을 또는 거기에 준하는 비용 개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회계조사를 통해서 각 사업자마다 원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산출해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보고서 검증이 됐든 일반회계 정리와 그 자료들은 레퍼런스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자마다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미끼 상품화 되어 있는 내지는 거의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고 방송사업자들은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면에서 보면 방송상품의 적정가격, 특히나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우리가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편법적으로 법망을 피하는 시장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작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지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우리는 면책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최대한 시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규제, 제재 네거티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상 포괄적인 과도한 처벌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행위를 일일이 다 법규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유형으로 정해지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법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처벌, 과도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장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제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의 예측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시장 현실에 또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동안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법제가 뒤따라가는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겠지만, 정책당국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탈행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에도 그런 것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실정, 규정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 알려지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해진 유형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제재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너무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물론 상위 법령에 규정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하위 법령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화·명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 근거되어 있는 법이나 시행령이 무엇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크게 보면 고시 제1조에 보시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이 고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시행령에서 상세한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모법에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하위법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시가 가장 말단의 하위 규정인데 고시에 다시 또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영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해지와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해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설명하도록 해 주고, 또 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만 하도록 해서는 별 효과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해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고시나 시행령에 해지와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어떤 기한을 줘서 한 달이라든가 기한 내에 반드시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기간,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지, 소위 말해 부당한 해지, 방어,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도개선할 때 핵심사항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보고드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이용자들이 해지를 해 주지 않고 지쳐서 그대로 해지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단순히 규정을 한다고 해서 또 설명하도록 유도한다고 해서 해지가 쉬워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조금 있다가 보고할 내용 별표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에 반영해서 일정한 기한을 정한다든지 하면, 정당한 사유로 일정한 것이 나열이 된다는지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꼭 시행령이나 고시에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방통위가 일종의 행정지도 또는 국민에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오늘 고시 개정안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기 방통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방송통신 결합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내지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미래부와 같이 오랜 작업을 통해 작년 8월에 종합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보고된 제3 조제1항제1호나의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 세부유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하느라고 위원장님과 이용자정책국·과장들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향후 일정에 ‘4월 관보 게재 및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무엇을 잘 준비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및 필요시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금지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기준이나 세부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있는 규정, 제도도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려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서, 이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 관련해서 실태점검이든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됐을 때는 필요한 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당초 우리가 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보 게재 및 시행 이후에 후속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업무가 반드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미 있는 고시, 의미 있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개정을 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동등결합판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아직 이 고시가 시행되지 않았습시다만 현재 해당 업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동등결합판매에 관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물론 케이블방송사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IT기업들이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상품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지금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등결합판매가 필요하고 효용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등결합판매는 당연히 양 당사자의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동등결합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서처럼 동등결합판매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1월 27일 공포가 되어서 7월 28일 시행 예정이므로 사업정지 권한 위탁,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고지 금지행위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최근에 결합판매 활성화 등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사업정지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2/100·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중요사항의 설명·고지와 관련해서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며,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금지, 그다음에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 통지,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제한, 또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호접속 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서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높은 수익배분을 금지하고,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인 거래조건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한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사전선택제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과징금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중대성 정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리·운영기관입니다. 어느 개인의 통신자료를 이통사들에게 정부 수사기관이 요청했는데 영장이나 법원 허가 심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신청서에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기관의 직무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통신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부 소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망법은 저희 소관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위원회나 아니면 미래부와는 부처 간 업무 협조, 협의나 이러한 것에도 우리가 관여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통신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전적으로 미래부 소관사항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은 정말 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문제이고, 특히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 억압할 소지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든가 정확한 우리 직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 통신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나 그 자료, 또 이통사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질문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니까 저도 좀 더 연구·검토해 봐야겠는데 우리가 관여할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검토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자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로밍요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내에서 이용하는 요금 대비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정액제의 차별들이 앞으로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 부분은 로밍요금에 포함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통사들의 무제한요금제에 대해서 과장광고로 조사를 했는데 사업자가 인정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제재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동의의결로 현재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데이터 로밍요금 중에 정액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일 정액제, 또는 1주일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제한이지만 설명 들었던 것과 다른 것이 보도를 찾아보니까 1일 대략 9,000원이면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통상 하루에 100Mb 정도를 초과해 쓰면 데이터속도가 초당 200Kb로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상 동영상은 거의 못 보거나 또 전송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요금의 과다한 청구 못지않게 이용자들이 지불한 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또 1일 종량제로 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더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 금지행위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로밍요금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규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일정한 양 이상을 쓰면 그다음부터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용약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현재 관련 법령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렵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로밍요금 관련한 불만을 보면 소비자 불만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통3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해외 사업자와 상호접속 문제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통3사의 담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통사업자들 간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통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사업자들 간의 안 된다면 해외 사업자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용자들의 이익저해 행위를 중단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법적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것은 사실 무제한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일단 실질적으로 무제한이 아닌데 1일 1만원을 내고 일정한 양을 쓰는데 실제로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무제한처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자체는 외국과의 계약관계가 있어서 조금 고려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 개선안의 구체적인 조문안을 보시면 현행 규정은 단순히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정리해서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를 부당하게 정리하는 내용 이외에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로밍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조항이나 개정안이 완전히 적용하기 어렵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하셔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질문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로밍상품의 내역을 설명할 때 무제한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속도가 대폭 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 하에서 용량의 제한 없이 일정한 같은 속도로 계속 제공하는 무제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안한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1일 정액제를 쓰지 않을 경우 로밍요금 요금폭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공포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자극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저도 그러나다만 1일 정액제를 쓰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요금제를 보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금지행위의 규정을 지금 나온 규정에 더 보완하자는 취지는 아니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에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이 금지행위규정 속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개정안에 비용과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이 부분이 추가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액제인데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여하튼 간 그 부분은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서 비용·수익의 부당 분류로 해서 정액제라고 하는 요금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1일 9,000원인데 9,000원에 상응하는 품질이 일정하게 딱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속도가 저하된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9,000원의 요금산정에 혹시 부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 적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어렵다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정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있는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보면 '결합판매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고시 논의도 했습니다만 결합상품판매에 있어서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도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적용하실 것입니까? 전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다,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했는지 어쨌는지 결과는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보고 규제할 것인지 그 후속조치를 말씀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하나는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서비스 간의 비용·수익 부담 분류에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보고 드린 안건에 결합판매고시에 관련된 부분이 할인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하반기에 결합상품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결합판매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준비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검토하는 이 안건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조건 및 이용 내용 자료 제공 필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신 자료 제공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이용자 권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더라도 앞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이용자들의 권익이 근본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수사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개인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자료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원칙하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정부, 통신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미래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은 물론 미래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관심을 표명할까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죄송한데….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금지행위에 관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부위원장님은 짧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그때도 제지를 할까 했었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끝나고 제가 이것 마무리 부분에….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금지행위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끝나고 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까는 고 위원님께 양보를 했으니깐 이번엔 계속 하고 싶은데, 박 국장님께서 아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관해 방통위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리가 금지행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 정하고 또 고시에 정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누어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미래부 소관인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이야기는 정보통신망법상에 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나 이용자 보호 이렇게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건과도 관련이 없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근래에 들어서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정 보완을 해 왔지만 오늘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최근에 언제,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언제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용자정책국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또 가장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이 다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고시 개정 의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것은 좋은데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최대한 실제 시행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셔서 제가 제지는 하지 않았습니 다만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고 포괄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만 그 제공 여부를 사후에 이용자들이 확인하거나 통보해 주는 것은 망법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통지규정이 있으면 저희 소관인데 거기에 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에 온라인으로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요청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 아닙니까? 아마 엄 열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엄 열 과장님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작년에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 확인이 쉽도록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용어나 적용 법률에 있어서 약간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에서 말하는 통신자료는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이용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체적으로 요금 연체통지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진짜로 썼는지, 위치나 또 통화일시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통신자료....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가 확인요청했을 때 이용자에게 확인해 주어야 할 자료에는 수사기관에 제공했던 통신자료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제83조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임의조항입니다. 그것이 미래부 소관인데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저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하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법적근거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신사나 포털사, 이것이 이 법을 따르는 사업자들 간의 대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 고시 규정 개정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연관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제지하시니까 별도 논의를 통해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 자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검토를 통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별도 발언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대해서 통신사나 포털들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용자들이 관련된 자료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망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사후에라도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금지행위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요청했을 때 요청을 거부하는 사정은 없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다 제공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 법률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

원에서 또 접근한다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금지행위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있습니다. 오늘 3월이 끝나는 날이고, 저와 고삼석 위원은 티타임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전 직원과 함께 하는 월례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전에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어간(於間)에 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라는 모임을 두 차례 가진 것 같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세 분이 티타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통보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저희가 문제제기한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 개선 문제를 결론 내야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정상화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선의에 맡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조속히 종전대로 정상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계속 터지는데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따로 노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합의제 정신 의견수렴과 의견조정, 이것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해도 그런 안건을 예정 기일에 맞춰서 예정대로 다수결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은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연기해서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한 것이 3번 있었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거나 토의기간을 연장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합리적으로 운영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라는 근거는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논의하겠다는 안건을 두고 회의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반대하면 숙고, 숙려하는 기간, 기회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한 달 지나갔는데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

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른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 두 번의 자리가 지난번 이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적인 자리였다’, ‘사적인 모임이었다’, 이러면 구속력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래서 언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간단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의견수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최선을 다 했는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수결로 가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전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 안전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예정된 기일을 넘김이 없이 바로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전체회의를 속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상임위원 간담회 과정에서 안전 상정을 보류하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안 중에 일부라도 서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합의정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다양한 의견을 내셨을 때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을 처리하겠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운용의 묘라는 것은 제가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혹시 느끼시기에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로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어려우실 것이고, 여기에서 무슨 약속 같이 해 놓으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것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계속 매우 강경하게 반복적으로 거듭 반대한 안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조정되었으며 수렴됐는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더 신경 써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어떻게 사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도 아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사적인 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두 분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자리로 오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벌어지는 장소가 위원장실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이 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업무였다는 그런 취지의 사적인 자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종전보다는 좀 더 최소한 상임위원 두 사람 이상이 강경하게 반대하면 토론의 기회, 의견수렴 조정의 기회를 더 갖고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들이 함께 다 노력해야겠지만 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는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별도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한 번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들이 해킹을 통한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줄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의 제재대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국가기관일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83조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정보통신망법에 어느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는 검토해 봐

야겠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사례도 안 밝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83조를 위반했으면 제83조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지금 제83조라는 근거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근거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검토하겠지요. 저희가 보도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고, 일단 그 소관은 미래창조과학부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제83조에 따라 요구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타 부처의 업무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통신사들의 개인 통신자료 제공이나 또 그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망법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통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세트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통신자료가 제공됨으로써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또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 검토도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법전 뒤져 보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국·과에서 연구·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우리 직무가 무엇에 걸린다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기주 위원님께서 “검토할 것이 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 침해행위 이런 것과 관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든가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불만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전제가 아마도 두 분께서 저희와 관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넓게 지금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없으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고,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정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첫 번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과 단어 자체가 조금 달라서 저는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클리어하기보다는 다섯 분의 위원님, 아니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간에 오늘 말씀나를 것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해서 빨리 저희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전의 프로세스보다 더 강화된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통신자료 제공 문제는 제가 실무 경험이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방통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이 차원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규정을 좀 더 저희가 리뷰 하는 것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1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폐회】